

[별지 제1호]

임원 선임 보고

문서번호 20180703-02

2018. 07. 03.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자산운용감독실 자산운용총괄팀

제 목 임원 선임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씨비알이 글로벌인베스터스 자산운용주식회사의 임원 선임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1. 임원 선임 내용 1부
2. 임원 선임 심사표 각 1부

씨비알이 글로벌인베스터스 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태호 (인)



작성 자 : 최민승 (전무)

전화번호 : 02-398-1564

(붙임 1)

임원 선임 내용

1. 선임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 (만료일)	업무범 위	주요경력 ¹⁾	검 직사항 ²⁾	자격요건 확인결과 ³⁾
비상근 감사	리차드 토마스 게이드너 프라이스	홍콩주재 영국 국적자 (여권번호 761247868)	2018. 06. 29 선임 (2015. 08. 14, 최초선임)	2021. 06. 28	비상근 감사	2011. 10 ~ 현재: CBRE Global Investors 아시아지역본부 대표이사 2015.8.14 ~ 2018.6.28: 당사 비상근 감사	2011.10~현재: CBRE Global Investors 아시아지역본 부(계열회사) 대표이사 2017.11.10~현 재: 씨비알이 글로벌인베스 터스코리아 유한회사(계열 회사,부동산투 자 지원) 비상임이사	결격사유 없음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 현직여부 표시)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3) 법 제5조 및 제6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유무를 확인한 결과 기재

2. 임원현황(변동후)

직 위 (상임 및 등기 여부)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만료일	주요경력 ¹⁾	검 직사항 ²⁾	비 고
------------------------	-------------	--------------------	-------------------------	-------	--------------------	---------------------	-----

대표이사 (상임 / 등기)	이태호 (李泰昊)	691111	2017.2.1 / 1회	2020.0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03 ~현재 씨비알이 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투자, 상무, 대표이사 • 2014. 09 ~ 2015. 03 존스랑라살르유한회사, 부동산중개, 이사 • 2012. 07 ~ 2014. 09 대림산업(주), 부동산개발, 부장 • 2011. 07 ~ 2012. 07 HMC투자증권, 부동산금융, 부장 	해당없음	
상무 (상임 / 등기)	김은정 (金恩庭)	711207	2017. 1. 1 / 1회	201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 3 ~ (현) 씨비알이 글로벌인베스터스 자산운용(주) 포트폴리오팀 상무 	해당없음	
이사 (상임 / 등기)	박금옥 (朴金玉)	730714	2017. 2. 1 / 1회	2020. 1.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11 ~ (현) 씨비알이 글로벌인베스터스 자산운용(주), 회계, 이사 	해당없음	
비상근 감사 (비상임 / 등기)	리차드 토마스 게이드너 프라이스	홍콩주재 영국 국적자	2018. 06. 29 (2015. 08. 14 / 2회)	2021.06.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10~현재 CBRE Global Investors 아시아지역본부 이사 (현) 	2011. 10~현재 CBRE Global Investors 아시아지역본부 대표이사 2017.11.10~현재 씨비알이 글로벌인베스터스코리아 유한회사, 비상임 이사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을 기재)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리차드 토마스 게이드너 프라이스	직 위	비상근 감사	직전 근무처 및 직위	ING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 아시아지역본부 대표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공통사항></p> <p>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ol style="list-style-type: none">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해당사항 없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	--

성 명	리차드 토마스 게이드너 프라이스	직 위	비상근 감사	직전 근무처 및 직위	ING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 아시아지역본부 대표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p> <p>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p> <p>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p> <p>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p> <p>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p>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p> <p>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p> <p>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p> <p>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p>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사항 없음			

성 명	리차드 토마스 게이드너 프라이스	직 위	비상임 감사	직전 근무처 및 직위	ING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 아시아지역본부 대표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해당사항 없음			

성 명	리차드 토마스 게이드너 프라이스	직 위	비상임 감사	직전 근무처 및 직위	ING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 아시아지역본부 대표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사외이사 해당사항></p> <p>I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다음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저부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 		<p>해당사항 없음</p>			

성 명	리차드 토마스 게이드너 프라이스	직 위	비상임 감사	직전 근무처 및 직위	ING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 아시아지역본부 대표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4)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p> <p>5) 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p> <p>6) 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된 회계법인</p> <p>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p> <p>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p> <p>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본다.</p> <p>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1)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 및 자은행 (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다. 나목 (1) 또는 (2)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p> <p>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그 이지외</p>		해당사항 없음			

성 명	리차드 토마스 게이드너 프라이스	직 위	비상임 감사	직전 근무처 및 직위	ING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 아시아지역본부 대표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또는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p> <p>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p> <p>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p>		해당사항 없음			

성 명	리차드 토마스 게이드너 프라이스	직 위	비상임 감사	직전 근무처 및 직위	ING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 아시아지역본부 대표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p> <p>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p> <p>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임직원</p> <p>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정후 기업의 임직원</p> <p>Ⅲ.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p>		해당사항 없음			

성 명	리차드 토마스 게이드너 프라이스	직 위	비상임 감사	직전 근무처 및 직위	ING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 아시아지역본부 대표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해당사항></p> <p>I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다음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p>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해</p>		해당사항 없음			

성 명	리차드 토마스 게이드너 프라이스	직 위	비상임 감사	직전 근무처 및 직위	ING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 아시아지역본부 대표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본을 말한다)</p> <p>4)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p> <p>5) 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p> <p>6) 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된 회계법인</p> <p>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p> <p>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p> <p>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본다.</p> <p>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p> <p>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p> <p>(1)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 및 자은행</p> <p>(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p> <p>다. 나목 (1) 또는 (2)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의</p>		해당사항 없음			

성 명	리차드 토마스 게이드너 프라이스	직 위	비상임 감사	직전 근무처 및 직위	ING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 아시아지역본부 대표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p> <p>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또는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p> <p>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p>		해당사항 없음			

성 명	리차드 토마스 케이드너 프라이스	직 위	비상임 감사	직전 근무처 및 직위	ING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 아시아지역본부 대표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 하고 있는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임직원 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의 임직원		해당사항 없음			
<p>중 합 의 견: 상기인은 심사 결과 본 심사표의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7월 3일</p> <p style="text-align: center;">씨비알이 글로벌인베스터스 자산운용주식회사 임원 준법감시인 최민승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씨비알이 글로벌인베스터스 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태호 (인)</p>					



【첨부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및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 외국인의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Richard Price is Chief Executive Officer – Asia Pacific of CBRE Global Investors and is responsible for the Firm’s business activities in the region, encompassing over \$6.5 billion of investments on behalf of the firm’s Global, Institutional Investor clients. Mr. Price chairs the Asia Pacific Regional Management Team and Investment Committee. He is also a member of the Firm’s Global Executive Committee and Global Investment Committee. In his role Mr. Price is also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and growth of the firm’s relationships with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Asia Pacific region.

Mr. Price joined ING Real Estate (acquired by CBRE in 2011) in 1996 and was appointed to his current role in July 2008 having spent the previous four years as a Managing Director of ING Clarion, based in New York. Mr. Price has more than 20 years of commercial real estate experience in Asia Pacific,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Mr. Price holds a Bachelor of Arts Degree with Joint Honors in Chinese and Business Studies from the University of Leeds in the UK and speaks fluent Mandarin Chinese. Mr. Price serves as a Trustee, Foundation Governor and member of the Global Board of the Urban Land Institute as well as a member of the ULI Asia Pacific Executive Committee. He is a former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of ANREV and AFIRE.

Present: CBRE Global Investors, CEO Asia Pacific
(Hong Kong/San Francisco, October 2011 – present)

Prior Experience: ING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 CEO Asia
(Hong Kong, July 2008 – October 2011)
ING Clarion Partners, Managing Director
(New York, August 2004 – July 2008)
ING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 GM Asia
(The Hague, 2000 – 2004)
ING Real Estate, China Country Manager
(Beijing, 1996 – 2000)
Brooke Hillier Parker, Associate Director / China Country Manager
(Hong Kong / Beijing 1993 – 1996)

Education: B.A. (Joint Hons.) Leeds University (UK), 1993
Tianjin Normal University (PRC), 1991
Stanfo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USA), 2014

Date of Birth: August 20, 1970

Place of Birth: London, UK

Nationality: British

Home Address: 2375 Broadway Street, San Francisco
California 94115, USA
(Commuting between Hong Kong and USA)

I confirm above is true.



Richard Thomas Gairdner Price

(Korean version)

확인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를 받아 대한민국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28 층에 본사를 두고 자산운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씨비알이 글로벌인베스터스 자산운용주식회사의 감사인 리차드 토마스 게이드너 프라이스는 2018 년 6 월 29 일 현재 첨부에 기재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서명:



성명: 리차드 토마스 게이드너 프라이스

직책: 감사(비상근)

추가확인자

서명:



성명: 이 태 호

직책: 대표이사

Confirmation

Richard Thomas Gairdner Price, an auditor of CBRE Global Investors (Korea) Limited, register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Korea and having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28th Floor, One IFC, 10 International Finance Road, Yeongdeungpo-gu Seoul, Korea (the "Company"), as of 29 June, 2018, do not fall under any of the negative qualifications as set out in the Attachment.

Principal

Signature:



Name: Richard Thomas Gairdner Price

Title: Internal Auditor

Additional Confirmer

Signature:



Name: Tae Ho Yi

Title: Representative Director

PRIVATE & CONFIDENTIAL

3 July 2018

TO WHOM IT MAY CONCERN

Dear Sir / Madam,

This is to certify that Mr. Richard Thomas Gairdner PRICE joined the ING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 in 1 May 1996. ING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 was acquired by CBRE Group, Inc in 2011, and Mr. Price is currently under the employment of CBRE Global investors (Asia Pacific) Limited and is holding the title of CEO, Asia Pacific.

Should you require any further information,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at +852 2846 3035.

Yours faithfully,
For & on behalf of
CBRE Global Investors (Asia Pacific) Limited



Katherine Wan
Regional HR Business Partner

징계내역 확인서

하기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내역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재직기간 중 징계여부
리차드 토마스 게이드너 프라이어스	홍콩주재 영국 국적자	2008.07 ~ 현재	없음

조치기관: 해당사항 없음

징계일: 해당사항 없음

징계사유: 해당사항 없음

징계처분: 해당사항 없음

2018년 7월 3일

씨비알이 글로벌인베스터스 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태호

